

문서번호	지침-경영-10
배포번호	사내게시용
관리부서	산업안전보건팀

화학물질 관리지침



(주)제주항공

개정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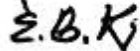
개정 차수	개정 일자	주요 개정 조항 및 개정 사유	기안 문서번호	비 고 (기안자)
0	2021.10.14	최초 제정	산업안전보건파트 -2021-631	김해수, 최지경
1	2022.4.4	경영방침 및 조직명 변경, 내용 일부 수정	산업안전보건팀 -2022-292	김해수, 최지경
2	2024.7.10	경영방침 수정 및 양식변경		박순민

산업안전보건 경영방침

(주)제주항공은 당사 및 협력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운영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며, 회사와 모든 임직원은 다음 사항의 실행에 역점을 둔다.

- 산업안전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그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사업장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작업 중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 제주항공 및 협력사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의견의 수렴, 개선방안 마련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경영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달성과 경영방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모든 직원에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모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주체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2023.1.1

(주)제주항공 대표이사 김 이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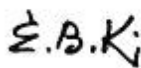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olicy

Jeju Air is committed to the goal of providing a healthy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to Jeju Air personnel, affiliates and other service providers who may be affected by the activities of the company.

Jeju Air establishes and implements a concrete OS&H management system tha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top priorities for management activities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and employees at all levels to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s.

- Jeju Air complies with all legislation and statutory requirements.
- Jeju Air strives to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mitigate risks, prevent accidents and reduce workplace hazards to as low as reasonably acceptable by using regular, periodic, objective assessments and updating our goals according to changes in OS&H legislation.
- Jeju Air pledges for proactive open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to engage with all Jeju Air employees and affiliat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in OS&H management system by gathering opinions, developing improvement strategies and providing precise guidelines.
- Jeju Air organizes and executes adequate budget necessary to achieve our vision, strategy and goals of OS&H management system. We also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systematic training and instructions on a continuous basis to enable them to perform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safely and effectively.
- All Jeju Air employees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s critical participants of the OS&H activities.

2023.1.1

CEO E-Bae Kim 
Jeju Air, Co., Ltd.

JEJUair

2023.1.1(Rev.4)

<목 차>

제1장 총칙	6
1.1 목적	6
1.2 적용범위	6
1.3 용어의 정의	6
1.4 책임과 권한	7
제2장 화학물질 구매 및 입고	9
2.1 유해화학물질 구매	9
2.2 유해·위험성 검토	9
2.3 화학물질의 입고 및 등록	10
제3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관리	11
3.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11
3.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작성	11
3.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또는 비치	11
3.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12
제4장 기록 및 보고	13
4.1 특별관리물질 취급	13
4.2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13
4.3 화학물질 취급 기록	13
4.4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13
4.5 화학화학물질 배출량 및 통계 조사	13
4.6 화학화학 누출 시 조치계획	14
제5장 보관 및 폐기	15

5.1 화학물질의 저장 및 보관	15
5.2 화학물질의 사용	15
5.3 화학물질의 폐기	15

[별표] 1.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LOC 양식	16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LOC 양식	17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18
4. 수입 화학물질 환경부 제출 절차	21
5. 수입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제출 절차	22
6. 화학물질 구입 및 입고 흐름도	23
7. 특별관리물질 현황	24

[별지] 1.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27
2.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28
3.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양식	29

제 1 장 총 칙

1.1 목 적

- 가. 본 지침은 제주항공(이하“회사”라 한다)의 활동 및 서비스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정부의 안전 및 환경규제를 준수하여 적정보관, 사용 및 관리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와 근로자를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 가. 회사의 활동 및 서비스 과정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수입 및 입고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1.3 용어의 정의

- 가. 화학물질 :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 나. CAS번호 :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이다.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모든 화학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다.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라.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마.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바. 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사. 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아.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자.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의 명칭, 물리·화학적 성질 및 유출 사고 시 대책 등이 명시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또는 이 혼합물의 제품에 대한 물질명, 구성성분 및 함유량,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리, 화학적 특성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
- 차. 유해성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 카. 취급시설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타. 화학사고 :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를 말한다.
- 파. 유해인자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에 해당되는 물질이라 한다.
- 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거. 제조등금지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너.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더. 특별관리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러.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6조 및 별표2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4 책임과 권한

가. 산업안전보건팀

- 1)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관한 인·허가 업무 수행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물질등록 업무 주관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
 - 유해화학물질 사용실적,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제조 화학물질 확인 및 보고 업무와 관련 기록 보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등 대외기관 수검 주관
 - 관련법령 모니터링 및 기준설정 통보
- 2) 산업안전보건팀 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한 화학물질 입고 허가 및 제한
 - 사내 입고 화학물질 MSDS 관리
 - MSDS 등 국문 작성 의뢰 및 그룹웨어 게시

- 수입 화학물질 MSDS 제출 및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
- 관련법령 모니터링 및 기준설정 통보

나. 구매팀

- 1) 구매팀 화학물질 구매담당자는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화학물질 구매 관리
 - 구매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최신 버전의 원본 확보 및 제공
 - 수입 화학물질 통관 관리 및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공
 - 수입 시 LOC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의 LOC 확보

다. 정비기재팀

- 1) 정비기재팀 화학물질 보급/관리 담당자는 정비본부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재고 관리 및 안전에 주의하여 화학물질을 보관하며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이상 유무 점검 및 개선조치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반출 등 재고 관리
 - 화학물질 구매시 MSDS 확보 및 경고표지 부착 요구 및 관리
 - 수입 화학물질 용기의 국문 경고표지 부착 및 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 및 보존
 -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라. 관리감독자

- 1) 작업장 내 취급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개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 및 게시
 - 용기에 국문 경고표지 부착 여부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근로자가 화학물질을 취급 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마. 현장 근로자

- 1) 화학물질 사용부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 MSDS 비치 및 소분사용 시 경고표지 부착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화학물질 취급 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류 착용
 -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응급조치 및 비상사태 대응 요령에 의거 즉시 보고

제 2 장 화학물질 구매 및 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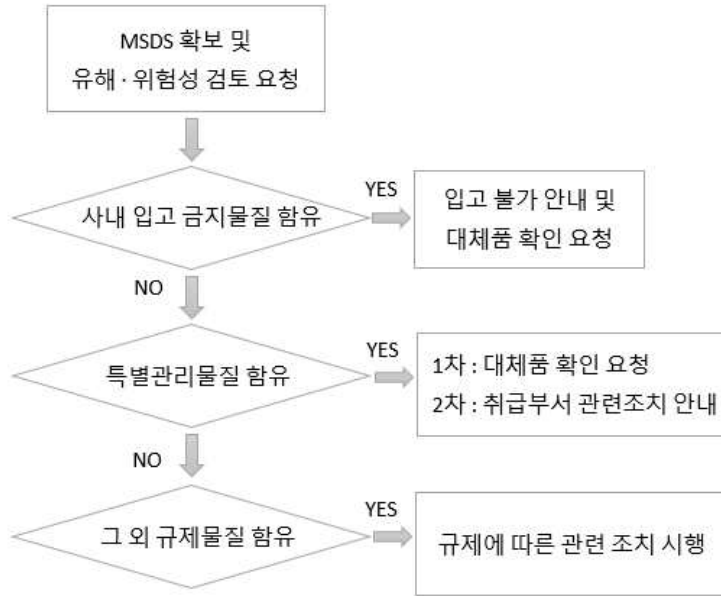
2.1 유해화학물질 구매

- 가. 화학물질 구매담당자는 화학제품 구매 시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대체 제품이 있다면 그 대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 나. 화학물질 구매담당자는 화학물질 제품의 성분명세서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LOC(Letter Of Confirmation)를 제조사로부터 받아 산업안전보건파트에 공유하여 수입가능 및 신고 또는 제출 대상 여부 확인 후에 구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 다. 구매담당자는 제조사로부터 LOC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이 제공한 **[별표1] 혹은 [별표2] LOC 양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별표2]를 요청할 때에는 **[별표3]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를 제공하여 해당되는 성분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단, MSDS 구성성분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라.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별표4] 수입 화학물질 환경부 제출 절차**에 따라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며 수입하는 화학제품에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할 환경청에 수입신고를 추가로 진행한다.
- 마. 산업안전보건팀 보건관리담당자는 구매담당자에게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여 **2.2 유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내 입고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바. 산업안전보건팀 보건관리담당자는 수입하는 화학제품의 유해·위험성을 검토한 후, 고용노동부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인 경우 **[별표5] 수입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출 절차**에 따라 수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한다.
- 사. 화학물질 구매담당자는 신규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에 산업안전보건팀에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팀은 구매팀 담당자, 정비기재팀 담당자와 협의하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 아. 물질등록 여부가 결정되면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화학물질 구매담당자, 정비기재팀 화학물질 관리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등록업무를 진행하고 필요 시 현장 부서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자. 화학물질 구입 및 수입, 입고는 **[별표6] 화학물질 구입 및 입고 흐름도**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2.2 유해 · 위험성 검토

- 가. 화학물질 구매담당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신규 화학물질에 사내 입고금지 물질 또는 수입 불가 제품, 화학물질 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팀에 유해·위험성 검토 요청을 하여야 한다.
- 나. 산업안전보건팀은 화학물질의 MSDS에서 규제대상 및 취급 시 필요조치 등을 파악하고 독성물질의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을 확인하고 입고 가능 여부를 구매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사내 입고 금지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로 규정한다.
- 라.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최소 1회 이상 대체품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야기하는 물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해 · 위험성 검토 흐름도

2.3 화학물질의 입고 및 등록

- 가. 정비기재팀은 입고되는 화학물질의 외관상 이상 유무, 제품 수량 등을 확인 후 이상 없을 경우 전산에 등록하며, 경고표지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 나. 전산 등록이 완료된 제품들은 화학물질 보관창고로 옮겨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매일 보관창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다. 화학물질 입고 시 정비기재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현장에 방제물품을 비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 라. 입고 작업 중 누출사고 발생 시 즉각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요령에 의거 즉시 보고한다.
- 마. 화학물질을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부서는 화학물질 입고 시 납품업체를 통해 반드시 국문 MSDS와 화학물질 용기 또는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입고 될 수 있도록 한다.
- 바. 산업안전보건팀은 **[별표6] 화학물질 구입 및 입고 흐름도**에 따라 화학물질을 입고하고 관련 법령 규제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사. MSDS 및 경고표지 관련 세부 사항은 MSDS 관리절차(MQ-8-01)을 준하여 운영한다.

제 3 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관리

3.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 가. 모든 MSDS는 제조사 또는 판매자로부터 최신버전의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 나. 산업안전보건팀은 사내 입고된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그룹웨어에 국문 MSDS 등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필요할 때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3.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작성

- 가. 수입 또는 판매자로부터 국문의 MSDS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된 업체에 의뢰하여 국문 MSDS 등을 확보한다.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2020-130호'를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MSDS 및 경고표지 국문작성 흐름도

- 나. 화학물질 사용부서 또는 정비기재팀 화학물질 담당자는 국문 MSDS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팀에 의뢰 요청을 할 수 있다.
- 다. 산업안전보건팀은 MSDS 등 국문 작성 의뢰를 받은 때에는 계약업체에 의뢰하고, 납품 후 그 결과를 그룹웨어에 게시한다.
- 라. 산업안전보건팀은 근로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또는 비치

- 가. 화학물질 사용부서는 취급 및 보관장소에 내 MSDS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나. 화학물질 취급 부서에서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 등록된 버전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산업안전보건팀은 정기 또는 수시로 화학물질 사용 장소에 MSDS 비치 여부 및 보관 상태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3.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 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나. MSDS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MSDS 관리절차(MQ-8-01)를 참고하여 운영한다.

제 4 장 기록 및 보고

4.1 특별관리물질 취급

- 가. [별표7] 특별관리물질 현황에 해당되는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는 [별지1]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나.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는 [별지2]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을 작성하여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해당 물질별 독성분류는 별표7 참조)
- 다. 산업안전보건팀은 특별관리물질 대상 확인 및 취급일지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4.2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 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는 [별지3]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작업장 내 게시하여야 한다.
- 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른다.

4.3 화학물질 취급 기록

- 가. 산업안전보건팀은 화학물질 취급공정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월 사용량 및 취급 여부 등을 기재한 화학물질 리스트를 반기별로 확인한다.
- 나. 화학물질 취급 부서는 분기별 산업안전보건팀의 화학물질 사용량 확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 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작성된 화학물질 취급 현황 리스트는 작업환경측정 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4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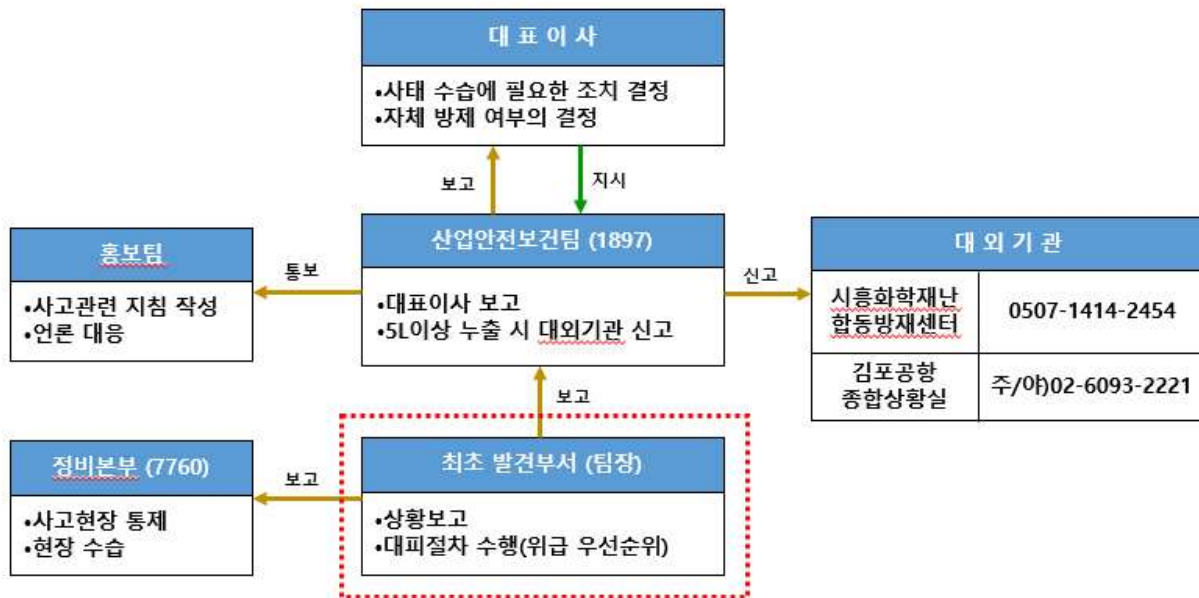
- 가. 정비기재팀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입·출고 실적을 화학물질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화학물질관리대장이 적절하게 작성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나.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화학물질관리대장 및 전산상의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을 확인하여 환경부에 보고한다.

4.5 화학물질 배출량 및 통계 조사

- 가.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화학물질 배출량 관련하여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여 환경부에 보고한다.
- 나.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해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량과 취급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에 보고한다.

4.6 화학물질 누출 시 조치 계획

- 가. 화학물질 누출 시 최초 발견자가 주변에 즉시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팀에 즉시 연락한다.
- 나. 산업안전보건팀 담당자는 즉시 이를 대표이사에 보고하며 화학물질이 5L이상 누출 되었을 때는 관계 대외기관에 신고한다.
- 다. 대표이사는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며 자체 방제 작업 여부를 판단하여 지시한다.



화학물질 누출 시 조치 대응 체계

제 5 장 보관 및 폐기

5.1 화학물질의 저장 및 보관

- 가. 화학물질 저장소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 입·출고 시를 제외하고 항상 시건장치를 한다.
- 나. 화학물질 저장소 출입문에 관련법에 따른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저장소를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다.
- 다. 화학물질 보관 중 누출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비상사태 대응 요령에 의거 즉시 보고한다.
- 라.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5.2 화학물질의 사용

- 가. 화학물질 취급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방법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 나. 화학물질 사용 중 누출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비상사태 대응 요령에 의거 즉시 보고한다.
- 다. 정비기재팀 화학물질 관리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입·출고 내역을 화학물질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3 화학물질의 폐기

- 가. 정비기재팀 담당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화학물질에 대해 폐기를 검토하고 폐기 시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에게 폐기를 요청한다.
- 나. 폐기요청을 받은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 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 관리 지침을 참고한다.

[별표1]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LOC 양식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regulated chemical substance(s) as its component(s).

▶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an be marked with 'CBI'.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Phase-in substance(s)			
Non phase-in substance(s)			
▶ Mandatory to submit all information on regulated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Toxic substance(s)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Restricted Substance(s)			
Prohibited Substance(s)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we confirm that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excluding the above components, are not designated as phase-in substances, non phase-in substances, toxic substances,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restricted substances, prohibited substances,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regulated under the Chemicals Control Law, and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which checked at ncis(<https://ncis.nier.go.kr/en/main.do>).

Date :

Sincerely yours,

Name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

Tel :

Fax :

E-mail :

Date :

Letter of Confirmation

To whom it may concern :

Product Name :

After careful review of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all composition of the product, excluding the listed in the MSDS(SDS) do not fall under the harmful factors classification standards under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Name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ttached Table 18]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Hazards and Risks of Harmful Factors
(Related to Article 141)

1. Classification criteria for chemicals

A. Classification criteria by physical hazard

- 1) Explosive substances: any solids, liquids, or mixtures generating gas that has the temperature, pressure, and speed capable of damaging its surrounding environment due to its own chemical reaction
- 2) Flammable gas: any gas (including mixtures) that is in the extent of being mixed with air and ignited at 20 °C(68 °F), and the standard temperature (101.3kPa) and any gas that spontaneously ignites in air below 54°C(129.2 °F)
- 3) Flammable liquid: any liquid having a flash point of 93 °C(199.4 °F) or lower at the standard temperature (101.3kPa)
- 4) Flammable solid: any substance that is easily combustible or causing or accelerating fire due to friction
- 5) Aerosol: any compressed gas, liquid gas, or dissolved gas filled in a non-refillable metal, glass, or plastic container with solid or liquid particles with contents are suspended in gas, equipped with an injection device that discharges in liquid or gas phase as foam, paste, or powder.
- 6) Water responsive substance: any solid, liquid, or mixture that interacts with water and spontaneously ignites or generates flammable gas
- 7) Oxidizing gas: any gas that causes or contributes to the combustion of other substances better than air by generally providing oxygen
- 8) Oxidizing liquid: any liquid that does not burn on its own, but causes or contributes to the combustion of other substances by generally generating oxygen
- 9) Oxidizing solid: any solid that does not burn on its own, but causes or contributes to the combustion of other substances by generally generating oxygen
- 10) Compressed gas: any gas that is filled within a container at 20 °C(68 °F) and 200kPa or more, or filled within a container in the form of frozen liquid gas (classified into pressurized gas, liquid gas, frozen liquid gas, and dissolved gas)
- 11) Self-reactive substance: any thermally unstable liquid, solid or mixture liable to undergo a strongly exothermic decomposition even without participation of oxygen
- 12) Pyrophoric liquid: any liquid, that, even in small quantities, is liable to ignite within five minutes after coming into contact with air

- 13) Pyrophoric solid: any solid, that, even in small quantities, is liable to ignite within five minutes after coming into contact with air
- 14) Self-heating substance: any substance that, by reaction with air and without surrounding energy supply, is liable to self-heating (excluding pyrophoric substances)
- 15) Organic peroxide: any liquid or solid organic compound with a bivalent structure that contains a derivative of hydrogen peroxide where one or both of the hydrogen atoms has been replaced by an organic radical
- 16) Substance corrosive to metal: any substance that will damage or corrode metals through a chemical action

B. Classification criteria by health and environmental hazard

- 1) Acutely toxic substance: any substance that has a harmful impact if administered orally or through the skin once or in a number of doses within twenty four hours, or that is inhaled through the respiratory system over four hours
- 2) Skin corrosive or irritant substance: any substance that destroys or irritates skin tissue when contacted (classified into skin corrosives and skin irritants)
- 3) Substance seriously damaging to the eyes or an eye irritant: any substance that causes tissue damage in the eyes or serious decline of vision (classified into substances seriously damaging to the eyes and eye irritants)
- 4) Respiratory sensitizer: any substance that induces hypersensitivity of the airways following inhalation of the substance
- 5) Skin sensitizer: any substance that induces an allergic response following skin contact
- 6) Carcinogen: any substance that induces cancer or increase its incidence
- 7) Germ-cell mutagenic substance: any substance giving rise to an increased occurrence of inheritable mutations in germ cells
- 8) Reproductive toxin: any substance that affects the reproductive ability or capacity or the development or growth of fetuses
- 9) Specific target organ toxicant (single exposure): any substance that is toxic to a particular target organ or the whole body following a single exposure
- 10) Specific target organ toxicant (repeated exposure): any substance that is toxic to a particular target organ or the whole body following repeated exposures
- 11) Aspiration hazard: any liquid or solid chemical product that enters the trachea and lower respiratory system directly through the oral or nasal cavity, or indirectly from vomiting, and produces severe acute effects, such as chemical pneumonia, varying degrees of pulmonary injury, or death
- 12) Hazardous substance to the aquatic environment: any substance that is harmful to

aquatic life following short-term or prolonged exposure

- 13) Hazardous substance to the ozone layer: specific substances pursuant to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Control, etc. of Manufacture of Specific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2. Classification criteria for physical agents

- A. Noise: any loud sound at or above 85dB(A) that may induce noise-induced hearing loss
- B. Vibration: local vibration that is generated by the use of rock drills or other hand-held pneumatic tools that induces white finger disease, Raynaud's phenomenon, peripheral circulatory disturbance; and whole body vibration that is generated by the use of motor vehicles, etc. that induces arthralgia, spinal disc herniation, digestive disturbance etc.
- C. Radioactive rays: particle beams such as alpha rays, beta rays, gamma rays, X-rays, proton beams that are capable of directly or indirectly ionizing air or cells
- D. Abnormal atmospheric pressure: any atmospheric pressure level where the gauge pressure is above 1 kilogram per square centimeter or below negative 1 kilogram per square centimeter
- E. Abnormal temperature: any temperature that may induce heatstroke, frostbite, skin diseases, etc. due to intense heat, coldness or high humidity

3. Classification criteria for biological agents

- A. Bloodborne pathogen: any infectious agent such a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epatitis B and C viruses, and syphilis virus that causes disease through contamination by blood
- B. Airborne infectious agent: any infectious agent such as tuberculosis mycobacteria, chickenpox virus and measles virus that contaminates through the air, droplets etc. into the respiratory system
- C. Insect and animal borne pathogen: any infectious agent transmitted through animal feces to humans that causes scrub typhus, leptospirosis and hemorrhagic fever, etc. or any infectious agent transmitted from livestock or wild animals to humans that causes anthrax, brucellosis, etc.

* Note

I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chemicals as set forth in subparagraph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prescribe and publish the subcategories for each physical hazard classification criteria as set forth in item A and the subcategories for each non-mixtures and mixtures classification criteria for health and environmental hazards as set forth in item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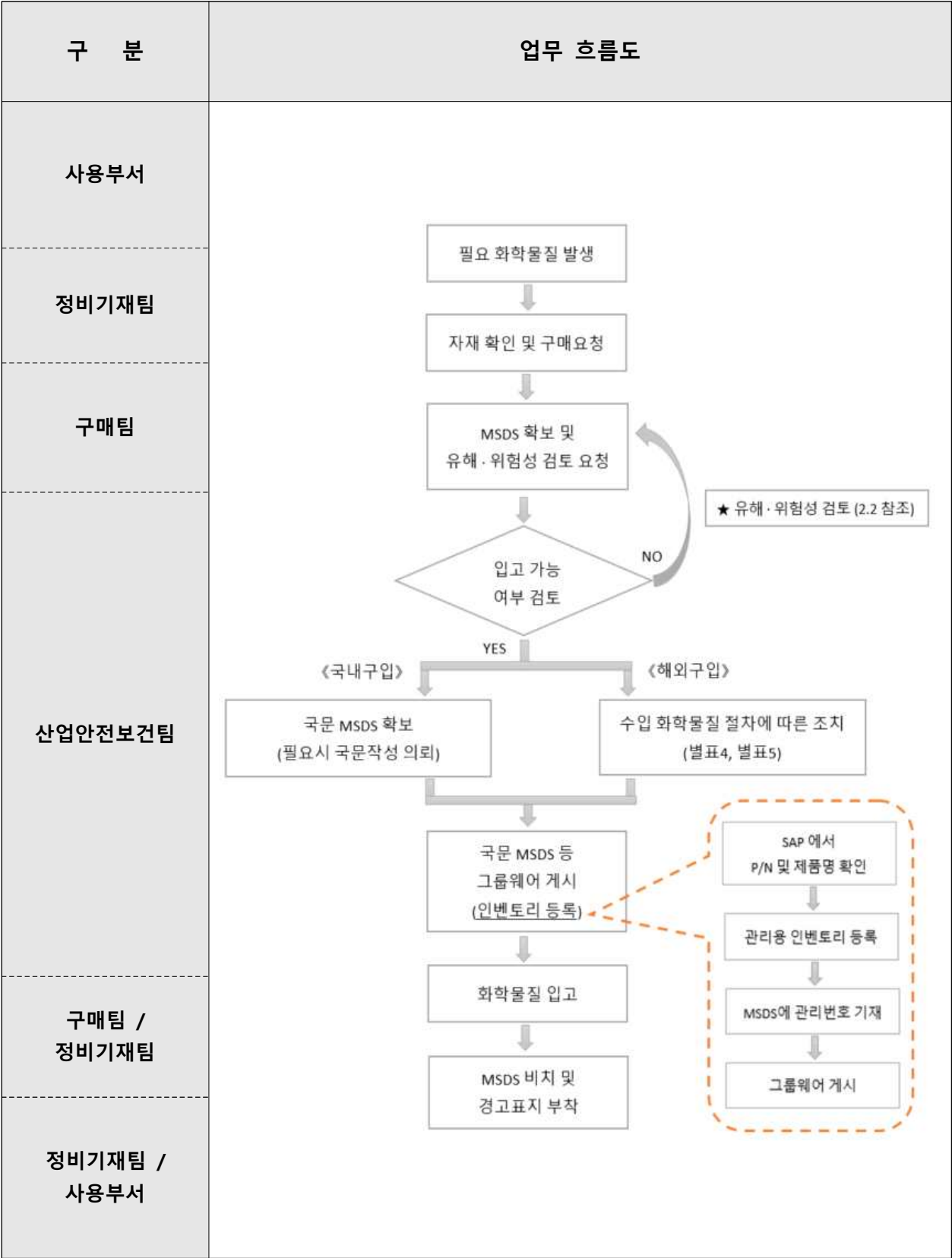
[별표4] 수입 화학물질 환경부 제출 절차

구 분	물질별 행정절차					
모든 화학물질 (기존+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신규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물질별 신고기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신규화학물질**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						
수입 신고 및 허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신규화학물질**	
	수입신고 (환경청)	수입허가 (환경청)			등록 (과학원)	면제 (협회)
↓						
판매, 제조, 사용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신규화학물질**	
	영업허가 (환경청)		판매·제조허가 (환경청)		수입 전 등록	
↓						
사후관리	1. 실적보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통계조사 (환경청) ※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등의 보고 (환경청) - 대상 :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비 고	* 금지물질은 사실상 수입 불가 **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승인					

[별표5] 수입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제출 절차

구 분	최초 수입 화학물질	기존 수입 화학물질
신고대상 확인	대 상	변경사항 발생 시 * 해당 변경사항 (직전 MSDS와 비교) 1) 제품명 2) 구성성분 및 함유량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해당 시 1일 소요)
필요서류 확인	MSDS 내 기재된 구성성분이 100% 미만인 경우만 LOC 필요	
MSDS 국문작성 의뢰	수입하고자 하는 MSDS 국문 작성 의뢰 (2주 소요)	
제 출	안전보건공단 MSDS 제출 * 첨부 : 국문 MSDS, 별지 제62호 및 LOC서류	
완 료	수입 가능	
비 고	1. 변경사항 3번 항목은 외부 업체를 통해 확인 가능 2. MSDS 구성성분 중 비공개 성분 있을 시 수입 불가 3. 제조사 발행 LOC만 인정	

[별표6] 화학물질 구입 및 입고 흐름도



특별관리물질(CMR) 현황

(2021.4 배포) **JEJUair**

연번	물질명(CAS No)	범위	CMR물질 독성분류			비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1	벤젠(71-43-2)	≥ 0.1%	1A	1B		Skin
2	1,3-부타디엔(106-99-0)	≥ 0.1%	1A	1B		
3	사염화탄소(56-23-5)	≥ 0.1%	1B			Skin
4	포름알데히드(50-00-0)	≥ 0.1%	1A	2		
5	니켈 및 그 화합물 (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 0.1%	1A (니켈금속 2)	1B (니켈카르 보닐)		
6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 (삼산화안티몬(1309-64-4)만 특별관리)	≥ 0.1%	1B(생산) 2(취급 및 사용물)			
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	≥ 0.1%	1A	2	2	호흡성
8	크롬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18540-29-9)만 특별관리)	≥ 0.1%	1A			
9	산화에틸렌(75-21-8)	≥ 0.1%	1A	1B		
10	1-브로모프로판(106-94-5)	≥ 0.3%	2		1B	
11	2-브로모프로판(75-26-3)	≥ 0.3%			1A	
12	에피클로로하이드린(106-89-8)	≥ 0.1%	1B			Skin
13	트리클로로에틸렌(79-01-6)	≥ 0.1%	1A	2		
14	페놀(108-95-2)	≥ 0.3%		2		Skin
15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	≥ 0.3%	1B (납 금속 2)		1A	
16	황산(pH 2.0이하인 강산) (7664-93-9)	≥ 0.1%	1A (mist)			흡입성
17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제외)	≥ 0.3%			1B	Skin
18	디니트로플루엔(25321-14-6)	≥ 0.1%	1B	2	2	Skin
19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127-19-5)	≥ 0.3%			1B	Skin
20	디메틸포름아미드(68-12-2)	≥ 0.3%			1B	Skin

특별관리물질(CMR) 현황

(2021.4 배포) **JEJUair**

연번	물질명(CAS No)	리범위	CMR물질 독성분류			비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21	2-메톡시에탄올(109-86-4)	≥ 0.3%			1B	Skin
22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110-49-6)	≥ 0.3%			1B	Skin
23	스토다드 솔벤트(8052-41-3) (벤젠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만)	≥ 0.1%	1B	1B		
24	아크릴로니트릴(107-13-1)	≥ 0.1%	1B			Skin
25	아크릴아미드(79-06-1)	≥ 0.1%	1B	1B	2	Skin 흡입성 및 증기
26	2-에톡시에탄올(110-80-5)	≥ 0.3%			1B	Skin
2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111-15-9)	≥ 0.3%			1B	Skin
28	에틸렌이민(151-56-4)	≥ 0.1%	1B	1B		Skin
29	2,3-에폭시-1-프로판올(556-52-5)	≥ 0.1%	1B	2	1B	
30	1,2-에폭시프로판(75-56-9)	≥ 0.1%	1B	1B		
31	이염화에틸렌(1,2-디클로로에탄) (107-06-2)	≥ 0.1%	1B			
32	1,2,3-트리클로로프로판(96-18-4)	≥ 0.1%	1B		1B	Skin
33	퍼클로로에틸렌(127-18-4)	≥ 0.1%	1B			
34	프로필렌 이민(75-55-8)	≥ 0.1%	1B			Skin
35	히드라진(302-01-2) 및 그 수화물	≥ 0.1%	1B			Skin
36	황산디메틸(77-78-1)	≥ 0.1%	1B	2		
37	1,2-디클로로프로판(78-87-5)	≥ 0.1%	1A			

주. 1. Skin 표시 물질은 정맥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발암피부자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

2. 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가. 1A: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나. 1B: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다. 2: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으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

3. 생식세포 변이원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 가 1A: 사람에게서의 역학조사 연구결과 양성 증거가 있는 물질
 - 나 1B: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 ①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내(in vivo)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 ②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내(in vivo) 체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음
 - ③ 노출된 사람의 정자 세포에서 이수체 발생빈도의 증가와 같이 사람의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 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 ①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내(in vivo) 체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 ② 기타 시험동물종을 이용한 생체내(in vivo) 체세포 유전독성 시험에서 양성이고, 시험관내(in vitro) 변이원성 시험에서 추가로 입증된 경우
 - ③ 포유류 세포를 이용한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며, 알려진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과 화학적 구조활성 관계를 가지는 경우
4. 생식독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 가 1A: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정도의 사람에서의 증거가 있는 물질
 - 나 1B: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의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 다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할 정도의 사람 또는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 라 수유독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 ① 흡수, 대사 분포 및 배설에 대한 연구에서 해당 물질이 잠재적으로 유독한 수준으로 모유에 존재할 가능성을 보임
 - ② 동물에 대한 1세대 또는 2세대 연구결과에서 모유를 통해 전이되어 자손에게 유해영향을 주거나 모유의 질에 유해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
 - ③ 수유기간 동안 아기에게 유해성을 유발한다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음

[별지1]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양식변경)

[보존기간]
30년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부 서 명		담당자	관리감독자
제 품 명			
특별관리물질(함유량)			

취급일	작업자	사용량	작업 내용	착용 보호구	특이사항

[별지2]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 양식(PPT) 파일은 별도 첨부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해당 물질명

(제품명 내 ** % 이상 함유)

발암성 1B, 생식세포 변이원성 1B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

방독마스크 착용 보안경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함

JEJUair
NEW STANDARD

[별지3] 작업공정별 작성요령 (양식)

* 양식(PPT) 파일은 별도 첨부

◇◇공정 관리요령

대상화학물질 및 유해성·위험성

제품명	PR 1440 B 2 PART A, PR 1440 B 2 PART B
구성성분	이산화 망가니즈, 카본블랙, 탈크 등
유해·위험성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뇌) 손상 유발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진식독성·호흡기·환경생물 독고 수생환경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및 보호구 착용

취급 시 주의사항	취급 시,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 착용 눈 또는 피부 의복에 닿지 않도록 주의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서만 사용 가연성 물질 피할 것 보관 시, 오염된 의복 및 보호장구와 분리하여 보관 5°C 이하 저장 금지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경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착용 보호구	안전부 여과식 방독마스크 및 방진마스크 사용 눈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경 착용 적절한 재질의 화학물질용 보호장갑 착용 적절한 재질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복 착용	

응급처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흡입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 충분한 산소공급(맑은공기 또는 인공호흡 실시)
섭취	구토 유발은 의사 확인필요. 입을 씻어내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눈 접촉	15분간 많은 양의 물로 씻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피부 접촉	오염된 의복을 벗고, 흐르는 물로 충분히(15분) 씻을 것, 필요 시 의사 진료
응급 신고	[사외] 119 [사내] ☎

JEJUair
NEW STANDARD